

後進國에 技術移轉에 있어 產業安全保健과 勞動條件에 關한 實行規則 作成을 위한 專門委員會 參加報告書



협회장

曹圭常

ILO(國際勞動機構)는 1981年 本會議題目에 關한 議題를 가지고 政府, 企業 및 勞組代表 10個國과 UN, WHO, UNIDO, IOE, ICFTU WFTU 등 國際機構들이 모여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

오늘날 後進國들은 急速한 產業化를 원하고 있으나 技術 資本面에 있어 先進國에 뒤떨어지고 있고 항상 產業安全保健과 勞動條件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本會議는 1985年 第 231次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先進國으로부터 後進國에 技術移轉함에 있어 問題가 되는 產業安全保健에 關한 實行規則을 作成하기 위하여 召集된 專門委員會로서 여기서 作成된 草案은 ILO 理事會를 거쳐 確定公布되는 것이었다.

本會議는 1986年 9月 30日부터 10月 7日까지 ILO本部가 있는 Swiss의 Geneva에서 開催되었다. 本會議 參加를 위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申請書가 왔었는데 政府側으로서는 탄자니아, 브라질, 서독, 인도네시아, 헝가리 5個國이 使用者側으로서는 나이제리아, 이태리, 한국, 불란서, 모리샤스 5個國이 그리고 勞組側

으로서는 큐바, 일본, 알제리아, 말레지아, 미국 5個國에서 統合 15個國代表가 選出되어 參加하였다. 筆者は 韓國經營者總協會에서 추천되어 이번 會議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외에 國際機構로서는 WHO(세계보건기구) WCL(세계노동연맹) ICEF(국제화학에너지연맹) IOS(국제표준기구) IOE(국제사용자기구) WFTU(세계상업연맹) CEFIC(구주화학연맹위원회)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UNIDO(유엔산업발전기구) 등의 議題에 관심을 가진 17個機構에서 專門家들이 參席하였다.

言語는 英, 佛, 獨 그리고 서바나語의 4個語가 使用되었고 日本代表는 外國語를 못하였음으로 特別通譯官을 데리고 왔었다.

開會에 있어 ILO Vladimir Chrounaev 事務總長의 人事가 있었고 이어 產業安全保健局長 Georg Kliesh 박사가 會議취지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ILO는 1980年부터 勞動條件改善政策中 勤勞者들의 福祉와 人權에 直結되는 安全과 保健을 위한 政策에 注力하고 있으며 그 一貫으로서 現在 工業化途上國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技術移轉에 따른 安全과 保健의 諸問題를 規

定化하기로 決定되어 ILO 事務局은 이 草案을 作成하여 本 會議를 召集한 것이다. 이 會議는 勞使政 3 者 代表로서 15 個國에서 專門委員이 參席하였으나 各己國家의 代表가 아니라 個人自 格으로 參加하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그러나 會議는 自然 勞使와 政府立場에서 的 討議와 意見이 提出되었다.

ILO에서 定하여지는 規定은 協約임으로 各 會員國에 對하여 法的拘束力은 없다. 그러나 各國은 여기서 定하여진 것에 따라 基準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本 會議는 탄자니아의 J.I.N Kurlu 박사를 의장에 選出하여 進行하였는데 미국, 블란서, 서독대표가 主導的發言을 하였고 알제리아 代表는 當시 격렬한 言語를 써서 注目을 끌었다.

筆者는 會議 諸頭에 있어 이 規定은 後進國을 위한 規定임으로 後進國들의 現實에 맞는 規定이 되어야 함을 提案하였다.

本 會議에서 採擇하여 理事會에 보내진 實行 規則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一般規則

여기서는 本規則의 目的과 適用, 用語의 定義, 基本原則등이 規定되었는데 技術移轉에 있어서는 工場의 設計, 建設, 設備, 操作運營에 關係되는 모든 機械와 工程이 包含되며 同時に 여기에 使用되는 原料, 中間產物 製品 그리고 廢棄物까지도 細緻한 措置와 安全管理, 精密檢查, 豫防과 治療를 위한 法的, 行政的 措置를 다루도록 規定하였다. 이를 위한 基本原則으로서 技術輸入國은 輸出國으로부터 技術移轉에 따른 產業安全保健에 관한 情報를 收集하고 公報하여 活用하여야 하며 輸出國 또한 이를 提供할 義務를 가지며 有害한 物質이나 作業工程을 輸出하여서는 안됨을 規定하였다.

(實際 美國에 있어서는 自國에서 禁止하고 있는 農藥의 2/3 를 外國에 輸出하고 있음을 報告하였다)

2. 考慮되어야 할 因子들

技術移轉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兩國間의 差異을 좁히는데 努力해야 하며 이를 위해 輸入國의 安全管理에 對한 確認과 아울러 專門水準의 技術訓練이 이루어져야 하며 열대지방에 있어서는 高溫에 따른 生理的健康障礙와 風土病 그리고 열대기후에 따른 機具의 破損과 作業環境의 變化도 同時に 考慮되어야 함을 明示하였다.

技術移轉에 있어서는 各國의 言語, 風俗 등 人類學的 考慮와 人格, 體力, 遺傳 등 人間工學的 考慮가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시켰다.

3. 事前에 決定되어야 할 事項들

技術移轉에 있어서는 輸入國에 대한 技術移轉에 適合性과 安全保健의 豫防對策, 社會保障制度의 有無등이 事前에 檢討되어야 한다.

4. 工場과 機械의 設計時

技術의 提供者は 工場과 機械設計에 있어 技術導入者에게 產業安全保健에 關한 基準을 說明해야 하며 이에 關한 專門家들이 參與해야 한다.

工場은 立地設定에 있어 外部專門家로 하여금 氣象, 地形, 道路 緊急救助 등 모든 環境이 檢討評價되어야 하며 原料 製品과 工程管理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危險分析에 對한 精密檢查가 이루어져야 한다.

危險防止를 위한 點檢表(Check list)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이 點檢表는 規則뒤에 附錄으로 添附되었다). 여기서는 큰 項目만을 列舉한다. 그러나 이 點檢表도 完全한 것이 아님을前提하였다).

使用될 物質들의 性狀

工程의 危險分析

工場의 適正位置의 選定

機械

危險物의 取扱과 保管
 危險廢棄物의 處理
 一般工學的 考慮
 危險環境
 防火對策
 綜合緊急對策
 人間工學的 人類學的 考慮
 科學的 基準의 使用(여기에는 國際機構와
各國의 基準이 附錄으로 紹介되었다)
 其他關係諸規定等

5. 追加的 安全規則을 要 하는 技術들

重要한 危險施設에 있어서는 그 物質들의 量
과 危險을 일으킬 수 있는 原因등이 알려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技術提供者는 有害物에 對한
確認, 評價, 防止를 위한 對策 緊急救助에 대한
安全施設과 이에 관한 法規의 마련, 緊急時 研究機關과의 協力, 安全에 대한 監視體系가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組織體系가 必要
하다.

6. 行政的, 制度的 마련

法的側面에 있어서는 現在法과의 關聯研究와
充分한 權限의 賦與가 必要하여, 技術에 대한 資格의 法的認定이 當事國間に 이루어져야 하며 새
로운 技術導入에 따라 이는 更新되어야 한다.

特許認定과 商標에 있어서는 安全保健에 關한
情報가 明示되어야 한다.

制度的側面에 있어서는 技術導入은 그 나라
의 產業安全保健에 있어 技術開發, 情報交換,

國家基準과 規定과의 調和와 協力, 產業技術
과 發展된 자문사업에의 協力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訓練의 必要性

技術移轉에 있어 訓練은 技術의 設計者와 使

用者 그리고 一般勤勞者에 이르기까지 勞使政
모두에 있어 必要하며 Section 2의 内容이 모
두 包含되어야 한다.

訓練에 있어서는 技術輸出 輸入國 모두 勞使
間에 있어 安全意識을 갖도록 意識開發이 必要
하며 勤勞者에 影響을 주기 위해서는 文化的 概
念이 導入되어야 한다.

訓練은 權限을 가진 자에 의하여 能力있는 機
關의 參與로서 安全保健의 向上을 위한 適切한
教育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訓練의 向上을 위
한 努力은 모든 分野의 協力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事業場에서는 無料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8. 情報의 收集과 活用

技術移轉에 關한 安全保健의 모든 情報는 技
術提供者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情報는
必要한 言語로서 技術管理方法, 技術에서 얻은
모든 經驗, 安全保健에 影響을 주는 모든 因子
들의 内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技術輸入國은 技術選擇에 있어 모든 情報를
活用하여야 하며 技術提供者는 이에 關하여 必
要한 자문에 應하여야 한다. 安全保健에 關한
情報交換을 위해서는 通信體系와 民間機構間의
連結이 必要하며 多國籍企業에 있어서는 더우기
國家間의 安全保健法 對策을 위한 國家間의 經
驗, 教育訓練의 效果的 方法등이 交換되어야 한
다. 情報交換에 있어서는 專門機關間의 協力이
necessary하다.

9. 企業에서의 活動

企業設置에 關하여는 Section 3에, 政府承認
을 받는 企業의 安全保健에 關하여는 Section
4에 記述하였다. 技術移轉을 받는 企業은 計劃
과 設計에 있어 必要한 모든 事項과 將來發展
과 改善의 面까지 考慮되어야 하며 技術提供者
로 부터 모든 情報가 收集되고 活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醫療福祉施設까지 考慮되어야 한다.

企業에서는 安全保健管理에 關한 모든 情報

가收集된 安全保健便覽(manual)이 開發되어 使用되어야 한다. 企業에 있어서는 設計에 있어 安全保健에 關하여 細部內容이 提示되고 危險에 對하여 評價되어야 하며(여기 政府責任者는 Section 3에 의하여 承認을 決定하여야 한다), 建設部面에 있어서는 購賣者는 Check list에 의하여 精密調查가 이루어져야 한다. 新로운 技術導入을 돋는 技術고문은 意慾을 가지고 充分한 期間동안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企業內에 있어 社會政策은 그 方針이 經營者에 의하여 社內에 明示(出版)되어야 하며 安全保健機構의 組織과 活動은 理事會에 報告되고 評價되어 社報로서 弘報되어 經營에 있어 重要性이 認識되어야 한다.

勤勞者は 不慮의 緊急事態에 對하여 이에 精通되게 訓練되어야 하며 事業場의 安全保健管理者는 自由롭게 그 活動이 保障되어야 한다.

企業은 알려지지 않은 有害物質에 對하여 勤勞者가 폭로되는 것을 最少限 억제해야 하며 工場에서 使用되는 모든 物質은 企業의 秘密이 漏出되지 않는 考慮下에서 化學名, 成分, 製造, 會社名, 使用方法, 毒性, 使用時 注意事項, 必要한 保護具, 應急處置 등이 알아볼 수 있는 言語로 表示되어야 한다. 化學物 製造供給者는 義務의 으로 安全基準과 緊急對策에 대한 說明이 提供되어야 한다. 企業이 가진 危險은 總括分析되어야 한다. 安全保健管理者는 工場의 절박한 危險에 對하여 作業을 中止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職場을 떠날 權利가 있다.

企業의 安全保健은 勞使와 專門家에 의한 共同委員會에서 重要事項이 決定되어 安全保健에 關한 記錄은 保存되어야 한다. 母企業은 子企業에게 安全保健에 關한 모든 精報를 提供하고 子企業은 이에 對하여 評價할 수 있는 能力を 가져야 한다.

10. 國家的 活動

技術導入國으로서의 政府는 技術移轉에 따른 安全保健을 處理할 수 있는 基本要件, 즉 現規

定의 整備와 可能한 必要한 人力과 施設을 갖추도록 하며 이에 關與하는 行政官은 必要한 訓練을 받아 ILO協定 特히 1981年 產業安全保健에 關한 155條를 尊守하도록 指導監督해야 한다.

技術提供國은 後進國에 對한 자문활동을 通하여 專門家, 原料, 施設에 對한 安全保健의 技術支援, 有能한 研究施設 設立을 위한 支援, 技術便覽을 通한 弘報, 其他 專門機關의 發展을 위한 모든 支援을 한다.

11. 地域水準에서의 活動

특히 後進國家間에 있어서 國立研究所는 安全保健에 關한 研究, 教育, 情報交換과 地域技術센타의 設立, 地域 專門家들의 技術移轉에 따른 產業安全保健에 關한 診斷 治療豫防에 協力하도록 한다.

12. 國際機構의 役割

國際機構에 있어 ILO는 後進國을 위한迅速한 情報의 傳達과 交換, 技術移轉에 對處하기 위한 研究機關의 支援 教育訓練을 위한 教材의 開發과 交流를 하며 其他 國際機關 또한 그固有의 역할속에서 技術情報提供, 專門委員들의 把握, 後進國에 대한 助言과 協力, 危險管理의 向上을 위한 技術支援, 技術移轉에 關聯된 國際基準의 設定과 協約規定의 마련 그리고 이에 關聯된 投資의 役割을 擔當한다.

13. 使用者團體의 役割

使用者團體는 勤勞者の 安全保健의 向上을 위하여 계몽과 꾸준한 努力を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活動을 위하여 세미나, 引報行事를 主管하며 訓練센타를 支援한다.

使用者團體는 企業體에 있어 각급 管理者와 勤勞者를 위하여 安全保健의 政策을樹立하고 安全保健事業을 支援하며 調查研究와 教育訓練

을 主管한다.

使用主는 安全衛生保護具의 提供과 管理에 힘
써야 하며 老人, 年少者, 婦女者, 장애자가 安
全한 作業을 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취한다. 使
用主는 安全保健에 관하여 決定된 사항을 實行
해야 하며 委員會를 構成하고 여기서 決定된 結
果를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

14. 勞組의 役割

勞組 또한 安全保健을 促進함에 있어 啓蒙과
知識向上을 위하여 꾸준히 努力해야 한다.

勤勞者는 그들의 權限下에서 安全保健規則을
尊守하기 위한 權限을 가져야 하고 教育과 訓練
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能力下에서 항시 安全에
對하여 監視하며 결함이 있을 시에는 上部에 報
告해야 한다.

勤勞者의 良心的인 行動을 벌해서는 안된다.
勤勞者는 安全衛生保護具의 着用을 權限 없이 變
更해서는 안되며 作業에서 얻는 經驗의 情報는
提供되어 安全과 健康을 增進시켜 나가야 한다.
技術移轉은 導入者가 政府인 경우, 國家間 합

작인 경우, 個人企業인 경우 등 多樣하며 技術의
內容에 따라서도 일률적인 規則으로 다루기 어
렵다.

여기 ILO에서 採擇되는 本 規則은 各國에
對하여 法的 拘束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基準이다. 그러나 各國에서는 이를 尊重하고 이
에 따르도록 努力해야 하며 이 規則을 어기는
경우 國際機構에 提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規則決定을 위한 本 會議에는 會員
國 政府에서 보내온 建議도 많이 參酌하였다.

技術導入으로 因한 產業發展은 그 國家社會에
많은 利益을 가져오나 同時에 危害와 不幸을 招
來하기도 한다. 이것은 勤勞者만 아니라 일반주
민까지 被害가 미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인도
의 보팔사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本 規則은 後進國에 대해서만 아니라 先進國
에 對해서도 同時에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勞
使政 모두의 協力에 의해서만이 成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本 會議는 끝으로 技術移轉에 있어서는 計劃
과 設計初에 있어 安全保健이 檢討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教育訓練을 強調하였다.

본문은 實行規則의 内容을 요약한 것으로서 實行規則 原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